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 3.19.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심사제도의 규제완화에 따른 세부 신청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6호, 2017. 10. 24.)됨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신청에 따른 서식개정 및 신설(안 제75조, 별지 제72호·제72의2호·제73호 서식)

나. 연속지적도 관리·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0388호, 2024. 3. 19.)됨에 따라 연속지적도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98조의2, 제101호서식)

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에 따른 인 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정(제103조의2)

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명칭(사업자등록증)을 정정(안 제104조, 제105조, 별지 제90호서식, 제9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임,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심의 요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목중 “이용신청서”를 “이용·활용 신청”으로 하고, 제7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75조 본문중 “활용 신청”을 “활용 심사신청을 하려는 자는”으로 하며, “이용·활용(심사·승인)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를 “이용·활용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의2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제공대장(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절에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연속지적도 위탁업무 법인 등의 지정) ① 영 제85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속지적도의 관리, 정비 또는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위탁업무(이하 “연속지적도 위탁업무”라 한다)의 이행계획서
2. 연속지적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연속지적도 업무와 관련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3조의2제3항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로 한다.

제104조제2항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의 제목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을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제공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제92호서식 확인사항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증명”으로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 9.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심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사항	신청내용			
	활용목적			
	제출처			
	법적 근거			
자료제공 방법	[] 인쇄물 [] 전산매체			
자료요구 범위	[] 기개발 [] 자료제공 [] 전국 [] 시·도 [] 시·군·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사항	신청내용			
	활용목적			
	제출처(해당하는 경우 기재)			
	법적 근거(해당하는 경우 기재)			
자료제공 방법	[] 인쇄물 [] 전산매체			
자료요구 범위	[] 기개발 [] 자료제공 [] 전국 [] 시·도 [] 시·군·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 1부(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필지당 각 인쇄물: 30원 전산매체: 2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속지적도 위탁업무 수행 법인·단체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설립 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제1항에 따라 연속지적도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연속지적도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연속지적도 위탁업무 관련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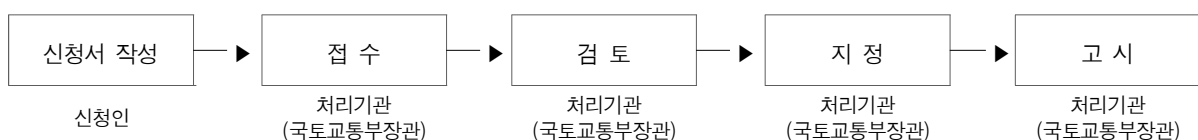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지적전산자료 <u>이용신청서</u> 등)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 적전산자료의 <u>이용 또는 활용</u> <u>신청</u> 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 전산자료 <u>이용·활용(심사·승</u> <u>인)</u>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u>이</u> <u>용·활용 승인대장</u> 은 별지 제73 <u>호서식</u> 에 따른다.	제75조(지적전산자료 <u>이용·활용</u> <u>신청 등</u>) ① ----- ----- - <u>활용 심사신청을 하려는 자</u> 는 ----- <u>이용·활용 심사 신청서를 작성</u> <u>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u> <u>게 제출하여야 한다.</u>
<신 설>	②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적 전산자료 <u>이용·활용 신청</u> 을 하 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의2에 따 른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지적소관청은 영 제62조제4 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u>이용·</u> <u>활용 제공대장(별지 제73호서식</u> <u>과 같다)</u> 에 그 내용을 기록·관 리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 다.
<신 설>	제98조의2(연속지적도 위탁업무

법인 등의 지정) ① 영 제8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속지적도의 관리, 정비 또는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위탁업무(이하 “연속지적도 위탁업무”라 한다)의 이행계획서

2. 연속지적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연속지적도 업무와 관련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생략) ② (생략) 1. <u>사업자등록증</u>(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 3. (생략) ③ (생략)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 (생략)	<u>하도록 해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사업자등록증명</u>----- -----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성능
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국
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는 신청
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
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생략)

②

사업자등록증명

1. (현행과 같음)
2.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현행과 같음)